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

제 출 자 : 20180088

제안이유 및 개요

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국가적·개인적 차원의 피해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는 피고인 중심의 형사절차 내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헌법 제10조가 국가로 하여금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대상에는 범죄피해자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피해자가 하루빨리 범죄피해로부터 벗어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2차 피해나 보복범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하여 법률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각종 특별법을 통해 보다 세심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거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등 충분한 조력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는 가명조서 등을

활용하여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나, 정작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기 일쑤고,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원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피고)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협박과 보복범죄의 타겟이 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선이나, 연인 사이의 사랑싸움, 가정 내 일시적인 불화 등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더 큰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심심찮게 들린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는 당당히 원래의 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피해자가 오히려 도망치듯 생활근거를 떠나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적인 위해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의 노출을 막으며 그 밖에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의 신고부터 형사재판 이후의 단계까지 관련법제 전반을 개정하고자 한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위험성평가표 작성을 의무화하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가정폭력범

죄의 신고자에 대한 가명 조서 작성 등 신원 보호를 강화하여 신고율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변호사 선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으로 보장한다. 공판 단계에서는 현행 배상명령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확대한다. 공판 이후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고자 할 때 주소 등 신상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복을 목적으로 한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 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에 응급조치, 긴급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가정폭력범죄뿐 아니라 성폭력범죄 일반에 확대 적용한다.

【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1. 11.
제출자 : 20180088

제안이유

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를 이원화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 가정폭력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 심리 후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별도로 피해자 등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 진행되며,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호처분과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에 중복되는 것이 많아 수범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각 제도의 목적 또한 중복되거나 불분명함.

○ 이에 따라 각 제도들의 성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여 명확성과 완결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임. 즉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가지는 제도로 보호처분 제도를 디자인하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응급조치, 긴급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단계별로 규정하고자 함.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두 가지 제도는 병렬적으로 운영됨.

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로서의 보호처분제도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인 형사처벌에 대응한 제도로써 가정보호사건의 결과인 보호처분을 상정하고, 보호처분의 내용 중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의 성격을 가지는 접근 또는 친권 행사의 제한을 제외하여 보호처분의 처벌적 성격을 명확하게 함.

다.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로서의 응급조치, 긴급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1) 응급조치

○ 응급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가장 초기 단계의 보호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 조치는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필요시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 등으로 피해자 인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만 가능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응급조치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분리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방법으로만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응급조치로서 가정폭력행위자를 체포하는 방식으로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범죄피해자 일반에 대해 행정규칙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등에서 권리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가정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를 조사할 때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가 최초 신고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 수 있음.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최초 현장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두어 피해자가 대응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보호명령

○ 임시조치(제29조)와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은 그 목적이나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청구권자나 기간 등을 달리 하여 여러 조문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고, 불이행시 처리도 임시조치는 과태료,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처벌로 서로 다름. 이에 수범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를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로 통합하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적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 등 위탁과 유치장 등 유치는 삭제함.

○ 현행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지만 총 합산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가정폭력의 내용과 정도, 가정폭력행위자의 태도나 성행 등에 따라서는 현행 2년의 기간보다 긴 기간 동안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자유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음. 따라서 피해

자 등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은 기간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법원이 조사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더라도 검사에게 통보 여부를 재량에 맡겨두고 있음. 그러나 이행실태의 조사는 재량이더라도 그 불이행을 발견한 이상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기소 여부를 검사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함.

3) 긴급보호조치

○ 응급조치는 신고 직후에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 조사·심리 후 결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따라서 그 사이에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긴급임시조치 제도가 있음. 이 제도의 이름을 긴급보호조치로 변경하여 피해자 등의 보호라는 목적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긴급보호조치를 한 경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

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호가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

○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판사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가정폭력행위의 재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임시보호명령제도는 폐지하고 긴급보호조치 제도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개편된 긴급보호조치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응급조치시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라. 가명조서 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

○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노출 및 그에 대한 보복범죄 등의 우려로 인해 신고 및 수사 협조 유도에 어려움이 많아 가명조서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상의 보호조치 제도를 준용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보호처분의 내용 개편(안 제40조, 제41조, 제45조, 제63조 개

정)

○ 보호처분의 내용 중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친권 행사의 제한을 삭제함. 이에 따라 해당 조문(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을 언급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개정함.

나. 응급조치의 내용 개편(안 제5조 개정)

○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의2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함을 필수적인 응급조치의 내용으로 함.

○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범 위험성의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함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법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를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둠. 이 때 긴급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 중 ‘범죄의 중대성’ 요건을 면제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대응 초기부터 추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를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응급조치시 피해자에게 법원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음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다. 임시조치 제도 삭제 및 피해자보호명령 개편(안 제8조, 제29조, 제29조의2 삭제 및 제13조, 제27조, 제49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55조의5, 제55조의8, 제63조, 제65조 개정)

○ 임시조치 제도를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로 통합하여 하나의 제도로 규율함. 단,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적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 등 위탁과 유치장 등 유치는 삭제함.

○ 제8조의2에 따라 긴급조치를 한 경우, 제13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가정폭력행위자를 인치한 경우, 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가정폭력행위자를 인치한 경우 등 의무적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변경함.

○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권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각각 확대하고, 두 경우 모두 판사 직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해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이나 종류, 주거나 직장 등의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하여 불이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

라. 임시보호명령 제도 폐지 및 긴급임시조치 제도 개편(안 제55조의4 삭제 및 제8조의2, 제8조의3, 제66조 개정)

○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삭제하고, 긴급임시조치 제도를 개편한 긴급보호조치 제도로 피해자보호명령 전까지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보호함.

○ 현행 긴급임시조치 제도의 이름을 긴급보호조치로 변경하고, 사법경찰관이 긴급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함.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소함.

○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될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긴급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마. 신고자의 신원 보호(안 제17조의2 신설)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자의 신원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보복범죄 가능성 등의 신고 저해 요인을 차단함.

【법률안】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①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의2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을
통보

3.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② 사법경찰관리는 전항의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 제1호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가정폭력행위자의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③ 사법경찰관리가 전2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제33조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음과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의 방법,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긴급보호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보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1항의 긴급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긴급보호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긴급보호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소

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긴급보호조치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가정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제1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제10조에 따른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정폭력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2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제1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③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의2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의2 제7항, 제8항,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⑧ 전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의4를 삭제한다.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긴급보호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긴급보호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8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 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66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①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
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
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하
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
음을 통보

<신 설>

<신 설>

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삭제>

<삭제>

2.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의2
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을 통보

3.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 위험
성에 대한 평가

② 사법경찰관리는 전항의 가정
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 제1호의 조
치를 취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
다.

1. 가정폭력행위자의 현행범인
체포 또는 긴급체포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법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③ 사법경찰관리가 전2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제33조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음과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의 방법,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제8조의2(긴급보호조치) ① ----

-----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

----- 제5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하 "긴급보호조치"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1항의 긴급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긴급보호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① ----- 긴급보호조치-----
---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긴급보호조치를 한 때부터-----

시간 이내에 가정폭력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
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임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
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
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

----- 가정폭력행위자
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
간 이내에 제55조의2에 따른 피
해자보호명령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피해자보호명령
여부를 -----.
제17조의2(피해자, 신고인 등
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피
해자, 가정폭력범죄를 신고(고
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
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
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
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7조(동행영장의 집행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
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
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
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
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소에의 위탁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
여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
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5
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
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
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
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
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
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
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
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
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
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⑨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⑩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⑪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임시조치의 집행 등)

① 제29조제8항에 따라 임시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삭 제>

수 있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
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
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
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
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
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의 제한

4. ~ 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
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
도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
다.

<삭 제>

<삭 제>

<삭 제>

4.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

-----.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항고)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

(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호 ~ 4호 (생략)

② (생략)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

--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

-----.

1호 ~ 4호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 그 종류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⑧ 전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은 --~~

----- 2
~~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

<삭 제>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① -

----- 긴급
보호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3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

이행실태에 대하여 -----

② 법원은 긴급보호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의8(항고와 재항고) ① ---

----- 제55조의4에 따
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
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

----- 검사, 피해자, 가정폭
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
조인은 -----

다.

② ~ ③ (생 략)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생 략)

제65조(과태료) (생 략)

1. ~ 3. (생 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과태료)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죄)

①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

-----.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과태료)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6조(과태료)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u>긴급임시조치</u>(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u>임시조치</u>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u>임시조치</u>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u>긴급보호조치</u>(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u>피해자보호명령</u>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u>피해자보호명령</u>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

【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1. 11.

제출자 : 20180088

제안이유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긴급보호조치의 발동 여부의 근거로 삼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모법 인용조문 번호 수정

주요내용

가. 재범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방법의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 재범 위험성의 평가는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근거하여 시행하도록 함.
- 재범 위험성의 평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히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따라 “고위험 가해자”로 평가되는 경우 등을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규정하여 법 제8조의2의 제2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가 반드시 발동되도록 함.

【법률안】

법률 제 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재범 위험성의 조사 등)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범 위험성의 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이후에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의료조치가 요

구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본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된 경우
2. 그 밖에 법 제8조의2의 긴급보호조치가 없이는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① 법 제55조의2 제7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2.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3. 다음 각 목의 조치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

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①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법 제55조의2 제7항 전단 또는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이 법 제55조의2 제7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및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요청한 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자문서)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작성, 제2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청,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변경·추가 및 연장 청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청 및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통보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조의2(재범 위험성의 조사 등)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범 위험성의 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로 하여야 한다.</u> <u>② 전항의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사법경찰관리가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이후에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의료조치가 요구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피해</u>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①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	<u>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u> ③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본다.</u> 1. <u>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된 경우</u> 2. <u>그 밖에 법 제8조의2의 긴급보호조치가 없이는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u>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①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7항----- ----- ----- ----- ----- -----. ----- ----- ----- -----.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 <u>55조의2 제7항 제3호</u>-----
--	---

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 4. (생략)

제5조(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①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또는 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이 법 제55조의2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및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조치를 요청한 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이행 통보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문서) 제2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청,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변경·추가 및 연장 청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

-----.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신변안전조치의 집행 방법)

① ----- 제55조의2 제7항 -----

-----.

제6조(신변안전조치의 이행 통보 등)

① ----- 제55조의2 제7항에 -----

-----.

제7조(전자문서)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작성, -----

청 및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통보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 ----- .
--	---------------------------

【별지 제6호서식】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가해자명: (. . 生)

가해자-피해자 관계:

피해자명: (. . 生)

요인	평가문항			결정 문항
당해사건 심각성	1. 폭행 심각도*	하(1)	중(2)	상(3)
	2.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없음(0)		있음(1)
	3. 혼란스러운 사건현장	없음(0)	있음(1)	
	4. 가해자 통제 어려움 (현장출동 경찰관에 욕설 등 난동)	없음(0)	있음(1)	
피해자 심리상태	1. 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없음(0)	있음(1)	
	2.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없음(0)		
가정폭력 전력	1. 가정폭력의 빈도 [본 건 제외]*	없음(0)	1~2회(1)	3회 이상 (2)
가해자 성격 심리적 특성	1. 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피해자 비난 (폭력 정당화 시도)	없음(0)	있음(1)	
	2.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심한 감정기복	없음(0)	있음(1)	
	3. 음주 문제 (알코올 중독 또는 폭력당시 주취여부)	없음(0)	있음(1)	
<고위험 가해자 분류>				
* 총점이 7점 이상일 경우		총점: (/13점)		
* 총점에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조사자 의견>

※ 재범위험성 평가: 상 중 하

조사일시:

조사자:

소속/직위:

【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1. 11.
제출자 : 20180088

제안이유

가. 피해자의 권리 고지규정 신설

○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지의무가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규정이 없어 법률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충분히 권리행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범죄피해자 일반에 대해 행정규칙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등에서 권리고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를 조사할 때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가 최초 신고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를 수 있음.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두어 피해자가 대응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긴급보호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 우리나라의 데이트폭력 건수는 연간 7천여 건에 달하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별 범죄’ 신고 건수는 연간 2만 여건에 달함. 경찰이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시행한 사례는 2015년 1105건이었으나 2016년 4912건, 2017년 6675건, 2018년 8월까지 6116건에 달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트폭력, 또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실제 발생 건수는 신고 건수에 비해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 현행법상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성폭력피해자 일반에 대하여는 그러한 수단이 없어 가해자가 체포·구속되지 않는 한 경찰 신변보호조치(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또는 민사집행법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이용하는 외에는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그러나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상의 제도로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고, 위반시 제재도 미흡하여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신변보호조치는 경찰이 피해자

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를 격리하는 내용 위주로 되어 있고, 장기간의 보호에 적절치 않으며, 신변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에 성공했을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는 등의 부족한 점이 있음.

○ 가정폭력 외에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직장·학교 내 성폭력 등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긴급보호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성폭력범죄 일반으로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 등의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권리 고지규정 신설

○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에서 진술권, 변호사 선임권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피해자가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함(안 제23조의2).

나. 긴급보호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3장의2 신설)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신청을 받아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함.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의 주거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의2 신설). 구체적인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성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준함.

○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0조의2).

【법률안】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등의 고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것
2.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
3. 제49조의6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제3장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긴급보호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제49조의3(긴급보호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성폭력범죄의 피고인과 피의자를 포함한다. 이하 “성폭력행위자”라 한다.)가 같은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

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49조의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보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의4(긴급보호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49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긴급보호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49조의3 제2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긴급보호조치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은 성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49조의6(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성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검사, 성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7(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49조의6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의8(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긴급보호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긴급보호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성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의9(병합심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성폭력범죄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성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2. 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49조의10(항고와 재항고) ① 제49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49조의7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피해자변호사, 성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9조의11(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의12(「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벌칙) ① 제49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성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3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등의 고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u> <u>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것</u> <u>2. 제27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u> <u>3. 제49조의6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u>

<u><신 설></u>	<u>제3장의2 긴급보호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u>
<u><신 설></u>	<u>제49조의3(긴급보호조치) ① 사</u> <u>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범한</u> <u>자(성폭력범죄의 피고인과 피</u> <u>의자를 포함한다. 이하 “성폭</u> <u>력행위자”라 한다.)가 같은 피</u> <u>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다시</u> <u>저지르거나 보복범죄를 저지를</u> <u>가능성이 있고, 긴급을 요하여</u> <u>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u> <u>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u> <u>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u> <u>에 의하여 제49조의6 제1항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u> <u>치(이하 "긴급보호조치"라 한</u> <u>다)를 할 수 있다.</u> <u>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u> <u>긴급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u> <u>시 긴급보호조치결정서를 작성</u> <u>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u> <u>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u> <u>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u> <u>을 기재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49조의4(긴급보호조치와 피해</u>

<신 설>

자보호명령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49조의3 제1항에 따라 긴급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49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는 긴급보호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49조의3 제2항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긴급보호조치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성폭력행위자의 행위

<신 설>

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49조의6(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성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검사, 성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신 설>

다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7(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49조의6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 설>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의8(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긴급보호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긴급보호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성폭력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9(병합심리) 법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성폭력범죄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성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

2. 그 밖에 사건의 관련성이 인

<신 설>

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49조의10(항고와 재항고) ① 제49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49조의7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피해자변호사, 성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9조의11(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12(「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장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폭력범

<신 설>

죄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50조의2(벌칙) ① 제49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성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1. 11.
제출자 : 20180088

제안이유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형사절차 외 민사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서도 형사재판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배상명령이 도입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배상범위를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뿐만 아니라 ① 위자료까지 확대하고, 이후 ② 적용대상 범죄를 성폭력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 또한 범죄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배상명령제도의 활용도는 무척 낮다. 특히

위자료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본질적으로 피해 금액의 특징이 어렵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이므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상 배상명령의 예외규정에 포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①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② 필요적 예외 사유와 임의적 예외 사유를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배상명령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법률안】

법률 제 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4. <삭제>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배상명령) ① ~ ② (생략)	제25조(배상명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 ----- -----
<u>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u>	<u>2. 피고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u>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삭 제>

<삭 제>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인의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1. 11.
제 출 자 : 20180088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① 증인으로
서 증언하거나(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② 증인신문에 의하
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의10). 그런데 이 중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한 피해자 진
술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 형사피해자의 재
판절차진술권에 관하여 헌법 제27조 제5항이 “형사피해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칙에서 정하고 있
는 의견진술 방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위헌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법률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규칙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피해자가 증언 외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①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는 사항과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구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 ② 범죄의 인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라 하더라도 법관 또는 배심원들이 그것이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하는 진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심증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의 인정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증언 외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만 증언 외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은 삽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방법과 달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검사,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사가 피해자의 의견진술이 어떠한 취지인지 질문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사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변호사제도를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 한정하여 인정할 논리적 당위성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국선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을 들여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저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실제로도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및 성폭력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갖는 권리들을 준용하는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피해자 권리 보호를 증진하고자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사소송절차에서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어 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신문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피해자참가제도를 전면도입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가 검사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면 그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형사피해자의 권리 보호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내용

가. 피해자가 증언 외 방식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게 함(안 제294조의2 제1항 개정)

형사소송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법률 차원으로 올리는 한편 규칙에서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만 증언 외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함.

나. 피해자가 증언 외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294조의2 제5항 신설)

증언 외 방식으로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의 의견진술의 취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경우 요청하면 그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관련성 없는 질문이나 변론의 경우 재판장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피해자 변호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안 제294조의5)

법익을 침해받은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변호

사들의 권리에 관하여는 현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옮기되 국선변호사 관련 규정은 제외함.

라. 피해자의 피고인 직접신문 근거 규정 신설(안 제294조의6)

피해자가 법원과 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도록 함.

【법률안】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피해자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해자의 진술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거나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등의 의견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질문 또는 변론이 해당 사건과 관계 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질문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4조의5(피해자등의변호사선임에 대한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 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제29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4조의6(피해자의 피고인신문)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의 취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동의를 얻어 피

해자가 피고인을 신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단, 법원은 허가 이전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u>신문하여야 한다</u>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u><신설></u>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 ----- ----- ----- ----- <u>신문하거나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u>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피해자의 진술이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u> ② -----

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신설>

----- 신문하거나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할 경우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은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들의 의견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질문 또는 변론이 해당 사건과 관계 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질문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4조의5(피해자들의 변호사선임에 대한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신 설>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제294조의6(피해자의 피고인신문)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의 취지가

	<u>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문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단, 법원은 허가 이전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u>
--	--

【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1. 11.
제출자 : 20180088

제안이유

- 형사절차에서 가명조서 등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신원이 보호되고 있으나,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 원고의 성명과 주소가 요구되는 이유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함임.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신원 또한 보호할 수 있는 원고를 특정하는 대체방법을 도입하고자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라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이 방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원고의 성명을 형사 확정판결의 사건번호로 대체하고 법원이 해당 소송을 위한 주소

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인 원고에 대한 대체적 당사자표시 방법 도입(안 제249조의2 제1항 신설, 제274조 제1항, 제208조 제1항 개정)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해당 형사사건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범죄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장에 해당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건번호로 원고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법원이 순번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249조의2 제1항).

○ 형사확정판결의 사건번호로 원고를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이후 준비서면에도 원고의 성명을 해당 대체적 당사자표시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판결서에도 원고의 성명을 해당 대체적 당사자표시 방법으로 기재하도록 함(안 제274조 제1항, 제208조 제1항).

나. 범죄피해자인 원고를 위한 소송용 주소부여(안 제249조의2 제2항 신설)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단체, 법원 내 송달함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소송을 위한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9조의2 제2항).

【법률안】

법률 제 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의2(범죄피해자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가 그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원고의 성명 대신 해당 형사사건 확정 판결의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 순번을 부여하고 그 순번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 중에서 소송을 위한 주소를 부여하고 소장에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1. 피해자 지원단체 또는 지원시설
2. 제188조의 송달함

3.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

제27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원고는 제1호의 사항에 성명 대신 제249조의2 제1항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건번호 및 피해자 순번을 기재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에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에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제20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제1호의 사항에 원고의 성명 대신 제249조의2 제1항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건번호 및 피해자 순번을 기재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249조의2(범죄피해자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가 그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원고의 성명 대신 해당 형사사건</u>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 8. (생략) ② (생략)	<u>확정판결의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 순번을 부여하고 그 순번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 중에서 소송을 위한 주소</u> <u>를 부여하고 소장에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u> <u>1. 피해자 지원단체 또는 지원시설</u> <u>2. 제188조의 송달함</u> <u>3.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u>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 ----- -----<u>. 다만,</u> <u>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원고는 제1호의 사항에 성명 대신 제249조의2 제1항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건번호 및 피해자 순번을 기재할 수 있다.</u>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 . 다만, 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제1호의 사항에 원고의 성명 대신 제249조의2 제1항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건번호 및 피해자 순번을 기재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1. 11.
제출자 : 20180088

제안이유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따르면 강제집행과정에서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됨.
-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대체적 당사자표시 방법(위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참조)이 적용된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 절차에서도 채권자의 성명을 형사확정판결의 사건번호로 대체하고,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
- 또한 법원이 민사집행 절차에서도 임시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인 채권자의 신원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인 채권자를 위한 소송용 주소부여(민사집행법 안 제23조 제3항 신설)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2항을 준용하여, 법원이 피해자 지원단체 또는 지원시설, 법원 내 송달함, 피해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3항).

나.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의 성명 기재에 대한 예외 추가 (민사집행법 안 제39조 제1항 개정)

○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된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대신 해당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건번호와 피해자 순번이 기재되면 집행에 개시할 수 있도록 함(민사집행법 안 제39조 제1항).

다.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신청·부여 과정에서 성명과 주민등

록번호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경(민사집행규칙 안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0조 제2항 개정)

○ 집행권원이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된 판결인 경우,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 성명 대신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의 형사확정판결의 사건번호 및 피해자 순번을 기재하고(제19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등은 밝히지 않도록 함. 법원 사무관도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함(제19조 제3항).

○ 집행권원이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된 판결인 경우, 집행문에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은 적지 아니하도록 함(제20조 제2항).

【법률안】

법률 제 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③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청구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절차에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

제3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된 사건의 판결의 경우, 이를 신청한 사람의 성명 대신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건번호 및 피해자 순번이 표시되어 있으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다만, 집행권원이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된 판결인 경우 제1호의 채권자의 표시 중 성명은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의 형사사건 확정판결

의 사건번호 및 피해자 순번으로 기재할 수 있고, 제4호의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은 밝히지 않을 수 있다.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 법 제35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
 4.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모두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
-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에 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다만, 집행권원이 「민사소송법」 제249조의

2 제1항이 적용된 판결인 경우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은 적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 ② (생략) <신설>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청구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절차에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2항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	민사집행법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 ----- ----- -----

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민사집행규칙 제19조(집행문부여 신청의 방식) 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 다만,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된 사건의 판결인 경우, 이를 신청한 사람의 성명 대신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건번호 및 피해자 순번이 표시되어 있으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민사집행규칙 제19조(집행문부여 신청의 방식) ① -----

다만, 집행권원이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된 판결인 경우 제1호의 채권자의 표시 중 성명은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의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건번호 및 피해자 순번으로 기재할 수 있고, 제4호의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은 밝히지 않을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채무자 또는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 (생략)

② 집행권원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③ (생략)

- .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에 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민사집행규칙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집행권원이 「민사소송법」 제249조의2 제1항이 적용된 판결인 경우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은 적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1. 11.
제출자 : 20180088

제안이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폭행·협박에 이른 경우에만 보복범죄로 처벌함.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가해자 등의 원치 않는 접근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을 느끼며, 나아가 보복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폭행에 이르기 전의 행위를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는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므로 보복범죄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며, 현행법상 단순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으로 밖에 규율하지 못하여 경찰 또한 적극적으로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
- 따라서 보복목적의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여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심각한 보복범죄를 미리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경범죄처벌법의 스토킹의 행위태양 중 교제를 요구하는 것은 제외)

주요내용

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대한 보복
목적 스토킹 처벌 (안 제5조의9 제5항 신설)

○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5조의9 제5항).

【법률안】

법률 제 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9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⑤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